

주심포식 공포의 표현원리

- 사찰건축과 그 지붕형태를 중심으로 -

최 고 은

(일본나라문화재연구소 외국인특별연구원, 공학박사)

주제어 : 주심포, 공포, 표현원리, 사찰, 고건축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공포란 주두·소로와 살미·첨차를 기본 요소로 하여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재이며, 동시에 외부에서 건물의 인상을 좌우하는 의장재이다. 이러한 공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목조건물에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공포는 한,중,일 목조건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냄에 있어 유효한 비교대상 중 하나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목조건물의 공포비교연구를 최종 목표로, 그 첫 단계로써 우리나라의 주심포식 공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심포는 기둥위에만 공포를 짜올린 형식으로,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공포형식이다. 기존의 주심포 연구는 양식사적 접근이 대부분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포가 의장적 표현수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건물에 있어서의 공포가 갖는 의미에 관해 고찰함으로써, 공포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코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중,일 공포비교연구의 기초적인 자료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은 국보·보물·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찰건축을 대상으로, 주심포식 공포를 가지는 총51동의 유구로 한다[표1].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유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2세기 이전의 건물은 현존하지 않는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은 필연적으로 12세기 이후의 건물로 제한된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우선 주심포의 틀을 명확히 정의한 후, 문화재청의 문화재목록을 참고로 정의에 부합되는 주심포 건물을 선택하였다. 도면이나 사진이 없는 건물은 현지답사를 통해 연구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될 경우는 기본적인 평면실측과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검토하였다.

1.3 주심포의 선행연구와 한계

주심포에 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선행되었으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선행연구

①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其五：第三節，高麗時代の建築樣式論」(『建築雜誌』1930년 8월)

우리나라의 공포에 관한 계통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려후기 이후의 건축양식을 크게 天竺

樣(垂麻組)과 唐樣(詰組)의 두 계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1960년대 이후 한국건축학회의 건축용어 제정시, 天竺樣(垂麻組)은 주심포로, 唐樣(詰組)는 다포로 해석되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② 杉山信三 『韓國の中世建築』(相模書房, 1984년)
關野貞(세끼노타다시)와 藤島亥治郎(후지시마가 이지로)의 논을 바탕으로 하면서 疎組(세끼노와 후지시마는 垂麻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疎組와 같은 의미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를 疎組第1形式, 疎組第2形式, 疎組第3形式으로 세분한다. 이는 차후 우리나라에서 주심포1형식, 주심포2형식, 주심포3형식으로 해석되었다.

③ 片桐正夫 『朝鮮木造の架構技術發展と様式成立に關する史的硏究-遺構にみる軒組形式の分析-』(日本大学理工学部建築学科, 박사학위논문, 1994년)

조선시대의 다포와 함께 고려시대 이후의 주심포에 관해, 가구기술의 양식을 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첨차형태인 쇠서형에 대해서 중국건축에서 나타나는 仮昂의 영향이 크다는 견해를 보인다.

(2) 우리나라 연구자에 의한 선행연구

① 高裕燮 「高麗의 仏寺建築」(잡지 『新興』 제8호, 1935년 5월)

우리나라 연구자로서 처음으로 공포에 관해 언급하였다. 공포에 관한 논점 자체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 연구자들의 의견과 동일하다.

② 尹張燮 『韓國建築史』(東明社, 1973년)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나라 연구자에 의한 최초의 연구 성과로 평가된다. 주심포에 관한 인식은 杉山信三(스기야마 노부조오)의 형식 분류를 받아들여 주심포1형식, 주심포2형식, 주심포3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③ 張慶浩 「韓國木造建築에 나타난 包에 관한 硏究」(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계획전공, 석사학위논문, 1975년)

주심포식 공포는 신라와 백제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포작이 발전했다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였다.

④ 鄭寅國 『韓國建築様式論』(一志社, 1975년)

주심포 형식을 시대별로 초기·중기·후기양식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였다.

⑤ 張慶浩 「柱心包形式의 再考」(『昌山金正基博士

華甲記念論叢』에 수록, 1990년)

장경호씨 본인의 석사논문(③ 「韓國木造建築에 나타난 包에 관한 硏究」)을 재정리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주심포 형식을 결구방식에 따라 백제계와 신라계의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면서, 일본 식민지사관에 입각한 주심포계와 다포계의 고려후기 도입설에 관해 반박하고 있다.

⑥ 裴秉宣 「多包系맞배지붕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계획전공, 박사학위논문, 1993년)

주심포를 결구방식에 따라 남방계와 북방계로 나눠, 장경호씨와 마찬가지로 柱心包 二系統의 우리나라 자생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사찰건축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 그것을 정리·분류하고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공포 연구가 아무래도 양식론 혹은 형식론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양식론적 규명이나 계통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첨차의 형태를 기본으로 주심포를 분류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거나 그의 변천과정으로 형식을 구분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작 형식 분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고찰은 충분치 못하다. 이는 양식사가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연구의 새로운 해석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포의 구조적 성격을 염두 하면서 양식사적 틀을 탈피하여 공포를 재조명 하고자 한다.

주심포식 공포가 가지고 있는 의장적 역할에 착목하여, 일련의 표현수법이 있는지, 거기에서 특정한 디자인 원리 내지는 논리를 유추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형식 분류만으로 끝난 공포연구의 돌파구를 찾아본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공포를 의장적 논리학으로 재구축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주심포의 분류

2.1.1 기존의 공포분류와 그 문제점

공포분류는 국내의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여, 공포연구의 장애요소 중 하나로 지적된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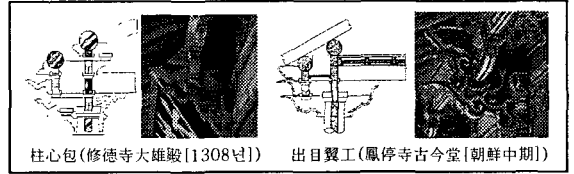
재의 공포분류는 많은 연구자가 주심포식·다포식·익공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¹⁾, 더욱이 익공식의 경우, ‘無出目翼工式’·‘出目翼工式’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²⁾.

주심포와 다포의 분류는 기둥위의 공포 배치에 따른 분류이다. 柱心包는 한자어의 뜻과 같이 기둥위에만 공포를 둔 것이며, 多包는 기둥 위는 물론이거니와, 기둥과 기둥사이에도 공포를 둔 것이다. 이들 용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연구자들의 疎組와 詰組를 번역한 용어이다. 이 두 형식 이외에 익공식이 있다. 익공식은 주심포와 마찬가지로 기둥위에만 공포가 짜이며, 살미의 형태와 上下 살미의 접합어부에 따라 주심포와 구분한다. 또한 익공식 중에서도 첨차가 출목을 이루지 않고 처마하중을 주심도리가 직접 받고 있는 것을 무출목익공, 그와 반대로 첨차가 출목을 형성하면서 처마 하중을 공포가 직접 받고 있는 것을 출목익공이라 구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우선 출목을 형성하여 상부하중을 공포를 통해 기둥에 전달하는 주심포·다포와 함께 출목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익공을 하나의 틀 안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익공식을 전혀 구조개념이 틀린 출목익공과 무출목익공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지적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심포와 출목익공의 구분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³⁾.

기존의 주심포와 출목익공의 구분방법은, 주심포는 헛첨차⁴⁾가 그 위에 놓이는 살미와 맞닿아 있지

않고 독립된 부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출목익공은 헛첨차가 기둥머리와 주두 양쪽에 걸쳐 짜이며 위의 살미부재와 上下가 맞닿은 경우를 말한다⁵⁾ (그림1).



[그림 1] 주심포와 출목익공
 도면출처: 『한국의 고건축4호12호』 (문화재관리국, 1979년-1990년)
 사진출처: 저자 촬영 (2003년 8월)

그러나 기둥위의 공포배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익공 역시 기둥위에만 공포가 놓이므로 어디까지나 주심포에 속한다⁶⁾. 그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포분류는 익공을 주심포와 다포와는 마치 다른 형식인양 분류하고 있다. 이는 공포의 기능과 구조에 상반된다. 이러한 공포분류에 관한 문제의식은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바 있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크며 공포연구에 있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2.1.2 새로운 분류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포를 분류하고자 한다.

우선 구조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출목을 가지는 포작식과 출목을 가지지 않는 비포작식으로 크게 나눈다. 포작식은 기둥위에 있는 공포의 배치에 따라 주

1)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년),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년), 박언곤 『한국건축사 강론』 (문운당, 1998년),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V-목조』 (보성각, 1998년)

2)장기인·전계서 (주석1), 이달훈 『翼工系栱包의 發生 및 變遷過程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년)

3) 이러한 익공식에 관해 김도경씨가 「한국건축 공포연구의 문제점과 몇가지 제안」 (건축역사연구 제 11권 4호 통권 32호, 2002년 12월)에서 익공식 분류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中西章(나카니시 아끼라)씨 역시 본인의 저서 『朝鮮半島의 建築』 (理工学社, 1989년) p.163에서 그 정의의 애매함에 관해 지적하고 있다.

4) 헛첨차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후 만들어진 造語로 여겨진다. 헛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여 첨차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여진듯 하다. 그러나 다분히 구조적 기능을 하고 있다 여겨지므로, 헛이라는 접두어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참고문헌 중 학회논문3참조). 이 헛첨차 용어를 비록하여, 어느정도 한국

건축에 관한 축적이 이루어진 지금, 고건축 건축부재에 관한 재정리가 건축학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5)김영덕 『韓國木造建築의 翼工樣式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3년), 이달훈·전계논문(각주2), 유성룡 「出目翼工의 起源과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년) 등이 있다.

6)북한의 건축학회에서는 리여성씨가 [조선건축미술의 연구] (국립출판사, 1956년)에서 조선시대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공포형식을 익공과 포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김왕직씨의 저서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발언, 2000년)에서는 포작계공포와 비포작계공포로 나누고 출목익공은 포작계로, 무출목익공은 비포작계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김도경씨는 전계논문(주석3)에서 조선시대의 자료인 의계류와 궁궐지를 근거로 공포형식을 포식과 익공식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포식의 경우는 주심포와 다포로 나뉘, 또다시 하양식과 비하양식으로 세분하며, 익공식의 경우는 출목이 없는 공포로, 익공의 부재수에 따라 이익공과 삼익공으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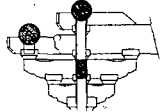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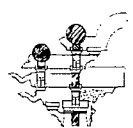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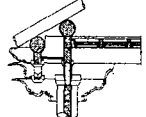

심포와 다포로 구분하며, 비포작식은 종래의 무출목 익공이 해당된다⁷⁾.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주심포는 기존의 출목익공이라 불리웠던 익공식을 주심포로 해석한다. 지금까지의 주심포 연구를 살펴보면 출목익공식을 주심포와 같은 틀 안에 포함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⁸⁾. 관련성이 있는 연구로는, 출목익공을 주심포식 영향으로 보고 주심포계 익공으로 해석한 논문⁹⁾이나 주심포와 출목익공의 공포형태와 결구방법의 유의점과 차이점에 관한 논문¹⁰⁾ 등이 있으나, 이들 일련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주심포와 출목익공을 다른 형식으로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출목익공은 기둥위의 배치는 물론이거니와 구조적 역할로 보아도 출목을 형성하여 상부하중을 받고 있어, 주심포와 확연히 같은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이를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출목익공을 주심포로 해석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를 염두해 두고 본 논문에서는 주심포를 공포의 짜임에 주목하여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분류키로 한다.

A타입은 헛첨차가 없이 주두 위로부터 공포가 짜여진 주심포를, B타입은 주두 밑에 독립된 부재로 헛첨차가 있는 주심포를 말한다. 그리고 C타입은 종래에 출목익공이라 불리던 형식으로, 헛첨차가 기둥머리와 주두를 걸쳐 짜이면서 상부의 살미와 부재의 상하면이 접하여 판재가 된 주심포를 말한다[표 2]. 이러한 분류는 스기야마씨가 서술하고 있는 주심포 1형식·2형식·3형식의 분류나 정인국씨가 서술한 주심포 전기, 중기, 후기의 분류와도 유사하나, 주심포를 엄밀하게 구분한다기 보다 어디까지나 전체를 하나의 변화과정으로 보는 입장이며, 기본적으로 공포의 구조와 짜임에 주목하여 시대의 통사적 그리고 공시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분류라 하겠다. 예를 들어 A타입은 종래의 분류로 하면 주심포

3형식 혹은 후기형식으로 분류되나 본 논문에서는 주두위에 짜여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고려시대부터 그 맥락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종래의 출목익공으로 분류된 형식을 본 논문에서는 C타입으로 명명함으로써, 주심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공포의 형식구분

包作式	A타입	헛첨차가 없이 주두 위로부터 짜는 형식	차주에 공짜는 없으며, 위터가 지는		
	B타입	헛가 된 채로 있는	차림재어형 첨두부되는		
	C타입	헛첨차와 기둥머리를 걸쳐 짜는 형식	차주에 물부상하와 접판이 있는		
多包		기둥과 기둥사이에도 공포가 놓여져 있는 형식			
非包作式	翼工	출목이 없으며, 살미의 형태가 새의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것			

위와 같이 분류한 주심포의 전개양상(그림2참조)을 살펴보면, 고려후기부터 조선초기에는 A타입과 B타입 주심포식 공포가 각각 병립하여 사용되었다. 특히 외부는 헛첨차와 살미로, 그리고 내부는 보아지로 표현하는 B타입 주심포식 공포 표현이 고려후기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 후 차츰 A타입보다 B타입이 주심포의 주류를 이루고, 16세기 이후가 되면 B타입 주심포식 공포가 C타입 주심포식 공포로 변화되어 간다. 이 변화의 배경으로는 격식이 높은 건물에 쓰이는 공포형식의 주류가 주심포에서 다포로 옮겨진 점, 사찰 자체 내의 경제적 여건, 목재의 부족, 그리고 살미의 형태에 의장적 효과를 집약시키는 우리나라 특유의 성향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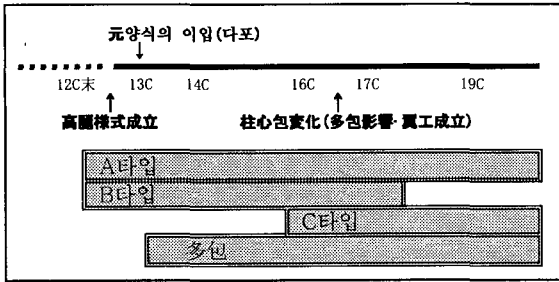
즉, 주심포식 공포는 A타입과 B타입→B타입→C타입으로 전개되어져 간다.

7) 주석6참조

8) 김도경씨가 (주석3)의 논고에서, 주심포와 익공분류의 애매함을 지적하고, 공포분류의 새로운 제안으로 포식과 익공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9) 김영덕, 전계논문(주석5)

10) 유성룡·주남철씨의 「출목익공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4호, 통권 102호, pp.211-221, 1997년 4월)



[그림2] 주심포의 전개

본 연구에서는 주심포를 세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주심포라는 하나의 계통 속에서의 변화를 명확하게 잡아내기 위한 분류일 뿐 형식 분류를 할 정도까지의 구분이 아님을 염두하면서, 주심포의 표현원리를 살펴보자.

[표3] 연구대상의 공포형식

No	문화재명	시대	공포형식	No	문화재명	시대	공포형식
1	鳳停寺極樂殿	12世紀	A	27	通度寺萬歲樓	1644년	A
2	浮石寺無量壽殿	1270년	A	28	麻谷寺靈山殿	1651년	C
3	修德寺大雄殿	1308년	B	29	天鎮宮	1652년	A
4	銀海寺居祖庵靈山殿	1375년	B	30	雙溪寺冥府殿	1687년	C
5	浮石寺祖師堂	1377년	B	31	雙溪寺天王門	1704년	C
6	江陵客舍門(官我建築)	高麗末	B	32	松廣寺羽化閣	18世紀初	C
7	觀龍寺藥師殿	朝·初	B	33	多率寺太陽樓	1748년	C
8	松廣寺國師殿	1420년前後	B	34	通度寺觀音殿	1749년	C
9	淨水寺法堂	正面:1689년 後面:1423년	正面:C 後面:B	35	善國寺大雄殿	1803년	C
10	無為寺極樂殿	1430년	A	36	大興寺龍華堂	1813년	C
11	高山寺大雄殿	朝·初	A	37	仙岩寺八相殿	1824년	C
12	道岬寺解脫門	1473년	B	38	仙岩寺圓通殿	1824년	C
13	環城寺尋劍堂	朝·初	C	39	新光寺大雄殿	1840년	正面:A 後面:異工
14	莊陸寺大雄殿	1592년以後	C	40	大興寺大光明殿	1841년	C
15	松廣寺眞眞堂	1608년	C	41	松廣寺眞影堂	1852년	C
16	松廣寺下舍堂	1622년	B	42	文殊寺文殊殿	朝·後	C
17	華嚴寺冥府殿	1630년	C	43	松廣寺羅漢殿	朝·後	C
18	開目寺圓通殿	朝·中	正面:異工 後面:C	44	通度寺應眞殿	朝·後	A
19	鳳停寺華嚴講堂	朝·中	B	45	露田庵大雄殿	朝·後	C

No	문화재명	시대	공포형식	No	문화재명	시대	공포형식
20	鳳停寺古今堂	朝·中	C	46	通度寺安養庵北極殿	朝·後	C
21	法住寺圓通寶殿	1624년	A	47	通度寺天王門	朝·後	C
22	華嚴寺圓通殿	未詳	C	48	佛智寺大雄殿	朝·後	C
23	興國寺圓通殿	1624년	C	49	白羊寺四天王門	1917년	C
24	法住寺捌相殿	1626년	1-4층:C 5층:多包	50	通度寺三聖閣	1935년	C
25	雙溪寺羅漢殿	1641년	C	51	奉國寺大光明殿	1958년	C
26	雙溪寺金剛門	1641년	C				

朝·初: 朝鮮時代의 初期(1392년-1600년)
 朝·中: 朝鮮時代의 中期(1600년-1670년)
 朝·後: 朝鮮時代의 後期(1670년-1910년)

2.2 주심포의 표현원리

사찰가람에는 종파에 따라 모시는 본존불의 차이는 있으나, 본존불을 모시는 중심건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대웅전 혹은 대웅보전, 아니면 대적광전으로 부르며 그 외의 불상을 모시는 건물과 차별을 둔다. 즉 격식이 높은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은 같은 가람에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다.

외부에서 건물의 격식차를 나타내는 표현을 살펴보면, 우선 건물의 규모와 지붕형태를 들 수 있다. 건물 규모는 주불전인 건물을 크게 조영한다는 단순 명확한 논리가 적용되며, 지붕형태는 적어도 12세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팔작지붕이 가장 격식 높은 건물에 사용된다. 따라서 가람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건물은 규모가 크며 팔작지붕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공포의 형식을 들 수 있다.

한편, 내부에서 건물의 격식차를 나타내는 표현을 살펴보면, 내부의 단청, 천정의 형태나 벽면분화에 그려진 의장등 가구부재의 장식을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외부와 마찬가지로 공포의 표현수법을 들 수 있다.

즉 공포는 사찰가람에서 건물의 격식을 나타내는 유효한 표현수법으로 사용되며, 특히 시각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외부에서는 지붕형태와 연동하여 그 표현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2.2.1 모임지붕과 공포의 표현원리

모임지붕은 정자건물이나 탑등에 사용되는 지붕형식으로, 그 평면은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을 가지는

건물의 직사각형 평면과는 달리 정사각형이다.

현재 모임지붕을 가지는 사찰건물은 法住寺 圓通寶殿(1624년)과 法住寺 八相殿(1626년), 그리고 1984년에 소실되어 재건된 雙峰寺 大雄殿(1986년 복원)의 세 동이 확인된다. 이들 유구 중 법주사 팔상전은 오층, 쌍봉사 대웅전은 삼층으로 된 목조탑이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목탑인 이 두 건물에 사용된 공포를 살펴보면, 법주사 팔상전은 일층에서 사층까지는 주심포, 오층은 다포를 이룬다. 한편 쌍봉사 대웅전은, 일층에서 삼층까지 모두 다포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각층의 공포가 다른 층의 공포와 서로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다.

본 연구는 주심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주심포를 가지는 법주사 팔상전에 주목토록 하겠다.

(1) 모임지붕과 공포의 표현원리

공포의 형식과 건물의 지붕형식을 동시에 고려 할 때, 기본적으로 사면의 처마 밑이 보이는 건물은, 외부표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추출 할 수 있다.

공포는 사면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한다¹¹⁾.

이 원칙은 외부에서 항상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현원리로 모임지붕을 가지는 법주사 팔상전을 살펴보면, 각층은 동서남북 사면이 모두 동일한 공포형식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층, 한층은 사면 모두 같은 형식의 공포이나, 아래층과 윗층의 공포형태는 서로 다르다.

법주사 팔상전은 C타입의 공포형식이 주류를 이루는 17세기 건물로, 일층에서 사층은 모두 C타입의 주심포식이다. 그러나 C타입을 사용하면서도, 각층의 살미 형태와 출목수를 달리하면서, 각층별로 서로 다른 표정을 가진다(그림3).

우선 일층의 공포를 살펴보면, 일출목이며 양서인 살미(이를 의례서에서는 제공이라 하며,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ㄱ으로 표기한다) 부재 두개와, 내부의 보가 외부에서 梁頭가 되어 그 끝이 둥글게 처리된 형태(이를 의례서에서는 운공이라 하며,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ㄷ이라 표기한다)로 되어 있는 부재 하나로 구성된다(2ㄱ+ㄷ, 그림3-3). 즉 제공 2부재와

운공 1부재로 형성된 것이다.

이층의 공포를 살펴보면 일층 공포가 일출목인 것과 달리 이출목이며, ㄱ材(제공)와 ㄷ材(운공) 사이에 또 다른 형태의 살미(이를 의례서에서는 익공이라 하며,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ㄴ이라 표기한다)를 사용하여, 일층 공포와 차이를 둔다(2ㄱ+ㄴ+ㄷ, 그림3-4). 즉 일층의 제공과 운공부재 사이에 익공부재가 들어간다.

삼층 공포는 이층 공포와 마찬가지로 이출목이나, ㄱ材(제공)밑에 끝부분을 사선으로 처리한 부재(이하, ㄹ이라 표기한다)를 추가하고, 이층의 ㄴ材(익공)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더하고 있다(ㄹ+2ㄱ+ㄴ+ㄷ, 그림3-5). 이것 또한 이층과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사층의 공포는, 이삼층과 마찬가지로 이출목이며 삼층 공포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살미를 살펴보면 모두 동일하게 끝을 둥글게 처리하여 삼층 공포와는 확연하게 다른 표정을 지닌 부재로 구성된다(그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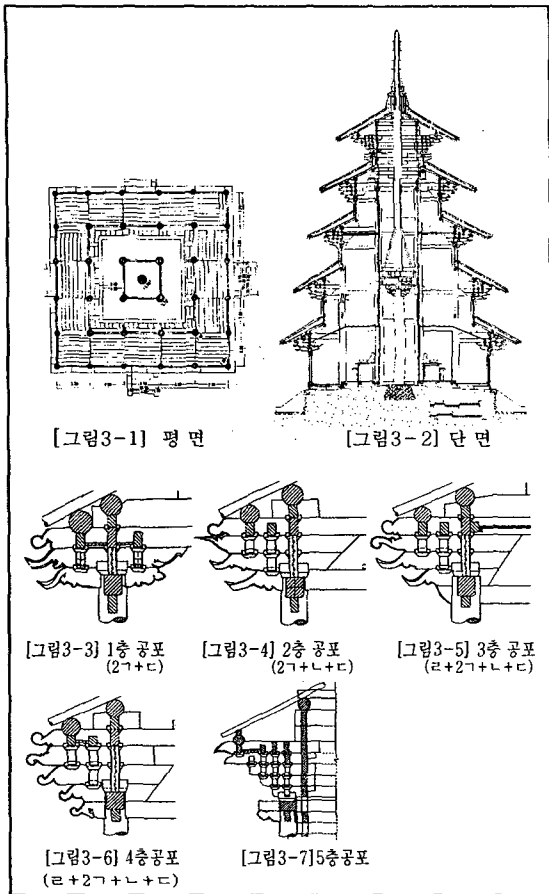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오층의 공포는, 일층에서 사층의 주심포와 판연하게 다른 사출목인 다포를 이룬다(그림 3-7).

이와 같이, 법주사 팔상전은 아래층에서부터 「C타입주심포·일출목」→「C타입주심포·이출목」→「다포·사출목」으로, 한층씩 올라갈 때 마다 공포를 사용하여 그 층의 격을 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포는 하나의 형식 안에서도 공포의 출목수와 살미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차별성을 주어 격식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각층의 내부공포표현을 주목해보면, 모두 보아지로 되어 있으며 당초문양이 초각되어 있다. 특히 일층의 보아지는 이층부터 오층에서 사선으로 처리된 보아지와는 대조적으로, 연봉을 모티브로 부재 단부를 곡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창건당시의 부재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부에서 불상을 모시는 부분이라는 격식을 나타냄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인 일층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공포의 표현에서 읽을 수 있다.

11) 이러한 표현논리는 藤井恵介(후지이케이스케)씨가 저서 『日本建築のレトリック-組物を見る-』(INAX, 1994년)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림3] 법주사 팔상전(1626년)

그림출처: 『법주사 팔상전 수리공사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1998년)

(2) C타입 주심포의 등급

이상의 법주사 팔상전에서 볼 수 있는 C타입 주심포의 등급은, 같은 C타입 주심포가 사용된 건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법주사 팔상전 삼사층에서 보이는 C타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일층과 이층의 공포형식만이 확인된다. 이것은 법주사 팔상전이 이례적인 특수한 건물임과 동시에 그 조영을 맡은 장인이 당시대의 공포형식을 응용하여 자신의 의장 감각을 심분 반영한 건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주사 팔상전은 일층이 일출목, 이층이 이출목으로 되어 있어, 확연하게 일층보다 이층의 격이 높다. 이 이층보다 격이 높은 삼사층 공포의 출목을 살펴보면 이출목이다. 즉 C타입의 주심포에서는 가장 격식이 높은 공포의 출목수가 이출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대상 중 C타입 공포를 살펴보자.

C타입의 건물33동(전체의64.7%)중에, 법주사 팔상전 일층에서 보이는 공포형식은85%, 이층의 타입은15%를 차지한다. 법주사 팔상전 이층의 공포형식은 C타입 공포의 15%이지만, 일층보다 격식이 높은 만큼, 興國寺圓通殿(1624년), 麻谷寺靈山殿(1651년), 淨水寺法堂의 정면 퇴간(1689년), 善國寺大雄殿(1803년), 그리고 佛智寺大雄殿(朝鮮後期)과 같이 사찰가람에서 중심 건물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법주사팔상전 일층의 C타입이 적용된 건물은 「殿」에서 「門」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넓다 ([표4]·[표5]참조).

이상과 같이, 17세기 이후의 주류를 이루는 주심포 형식인 C타입 공포는 사찰경내에서 주요한 건물의 공포가 다포가 아닌 주심포를 사용할 경우, 건물의 격식에 따라 이출목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일출목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타입과 B타입에서의 주심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2.2 팔작지붕과 공포의 표현원리

팔작지붕은 적어도 12세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궁궐의 중심건물이나 사찰의 본존을 모시는 건물 등 가장 고급 건축에 사용되는 지붕형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 중 팔작지붕은 12동으로 그 중 11동이 「殿」 건물에 사용되고 있으며, 「殿」이 아닌 경우에도 경내에서 주요 건물에 사용되고 있어¹²⁾ ([표4]참조), 격식이 높은 건물은 팔작지붕을 사용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팔작지붕에 사용되는 공포는 A혹은 C타입이 사용되는데 반해, B타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A타입 공포형식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오래전부터 격식이 높은 건물에 사용되어져 온 공포 형식임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남아있지 않을 뿐, 실제로는 B타입의 공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조선전기 이전의 유구가 A타입밖에 없음을 볼 때, 팔작지

12) 만세루는 본래 부처의 설법이 만세에 이르기까지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범회나 범요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누각이다. 통도사의 경우, 「下楹殿」가람의 중심건물인 영산전과 마주보고 있으며, 만세루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추측된다. 본래 만세루가 아니라 만세전이라 불리고 있던 것을 누로 개명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天鑑宮(1652년)의 경우, 역대시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전이 아니라 궁이라고 불린다. 그 역할은 사찰가람의 대웅전에 해당되는 위치를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殿」으로 해석하였다.

붕에 사용된 공포는 A타입이 B타입에 비해 주류를 이룬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 팔작지붕과 공포표현 원리

팔작지붕에 사용되는 공포는 외부표현에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추출 할 수 있다 (그림 4).

i . 공포는 사면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한다.

ii . 공포 출목수는 이출목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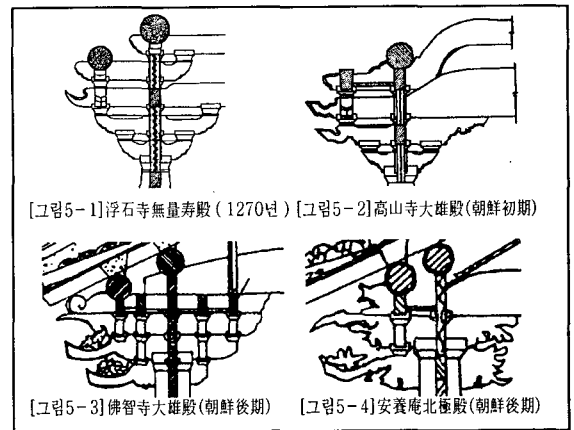
i 의 ‘공포는 사면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한다’ 는 원리는 전술한 모임지붕과 마찬가지로, 팔작지붕의 구조를 고려하면 당연하다 하겠다. 팔작지붕은 사면의 벽이 모두 노출되며, 당연히 처마 밑에 위치하는 공포 역시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부분이다. 즉 의장요소로서 중요시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여기에 사용된 공포 표현은 유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부터 사면의 공포가 동일하게 처리된 경우가 많다. 이는 ‘공포는 사면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한다’ 는 수법이 일정한 원리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원리는 한채의 건물에서 그 정면, 측면, 후면의 격이 동등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遺構: 浮石寺無量壽殿 [1270년], 高山寺大雄殿 [朝·初], 華嚴寺圓通殿 [未詳], 通度寺萬歲樓 [1644년], 天眞宮 [1652년], 通度寺觀音殿 [1749년], 善國寺大雄殿 [1803년], 全州松廣寺羅漢殿 [朝·後], 通度寺安養安北極殿 [朝·後], 佛智寺大雄殿 [朝·後]).



[그림 4] 팔작지붕과 공포 (高山寺大雄殿·朝鮮初期)
그림 출처: 저자 촬영 (2003년 8월)

다음으로 ii의 ‘공포 출목수는 이출목 이상으로 한다.’ 는 것 역시, 팔작지붕에 사용된 공포형식의 원리로 여겨진다. 주심포는 전반적으로 격식이 높은 건물일 경우 이출목을 사용하는데, 특히 팔작지붕의 경우는 가장 격식이 높은 건물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포는 이출목 이상을 형성한다. 물론 17세기 이후가 되면, 주심포는 A와 B타입보다는 C타입이 주류가 되기 때문에 팔작지붕이지만 일출목이 사용되는 경우도 나타난다¹³⁾. 그러나 浮石寺無量壽殿 (1270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가장 격식 높은 건물에는 적어도 고려시대 말부터 전통적으로 「팔작지붕-이출목 주심포」의 외부표현이 사용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팔작지붕-이출목 주심포」의 원리는 후대의 건물인 天眞宮 (1652년)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조선시대까지도 그 맥이 이어져왔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부의 공포표현을 살펴보면, 주로 「보아지」를 사용한다. 이는 외부와 내부의 표현을 확연하게 달리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그림 5).



[그림 5] 팔작지붕의 공포내부표현

그림출처: 그림5-1·그림5-2 「한국의 고건축3호·2호」 (문화재관리국, 1976년·1975년)
그림5-3·그림5-4 「문화재수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7·1989년)

A타입 공포를 가지는 오래된 유구인 부석사 무량수전의 경우(그림5-1)를 살펴보면, 외부표현과 내부표현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대차는 있으나 불지사 대웅전의 경우(그림5-3)를 살펴보면, 다포의 전형적인 내부처리 수법인 「교두형 살미+소로」로 짜여 출목을 가진 공포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둘의 중간단계로 생각되는 고산사

13) 華嚴寺圓通殿 [未詳], 通度寺萬歲樓 (1644년), 通度寺觀音殿 [1749년], 通度寺安養安北極殿 [朝鮮後期]은 팔작지붕을 가지나 모두 일출목이며, 모두 17세기 이후의 건물로 여겨진다.

대웅전의 내부표현은 「보아지」와 「살미+소로」의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그림5-2). 그러나 이 3동 이외의 A와 C타입 주심포를 가지는 팔작지붕의 내부 공포표현은 모두 「보아지」이다(그림5-4, [표4] 참조).

[표 4] 연구대상 팔작지붕과 공포형식

No	문화재명 (시대)	공포형식			天井 有無	衝梁 有無
		타입	출목수	외부공포 내부공포		
2	浮石寺 無量壽殿 (1270년)	A	2	四面同一 살미+소로 (외부공포 와 동일)	×	×
11	高山寺 大雄殿 (朝·初)	A	2	四面同一 살미+소로 +보아지	×	○
22	華嚴寺 圓通殿 (未詳)	C	1	四面同一 보아지	○	×
23	興國寺 圓通殿 (1624년)	C	2	正面強調 보아지	○	×
27	通度寺 萬歲樓 (1644년)	A	1	四面同一 正面御間區別 보아지	×	?
29	天鎮宮 (1652년)	A	2	四面同一 보아지	불단위○ 그외×	○
34	通度寺 觀音殿 (1749년)	C	1	四面同一 보아지	○	×
35	善國寺 大雄殿 (1803년)	C	2	四面同一 正面御間區別 보아지	○	○
38	仙岩寺 圓通殿 (1824년)	C	1	正面1 側面1 正面強調 보아지	○	×
43	松廣寺 羅漢殿 (朝·後)	C	2	四面同一 正面御間區別 보아지	○	×
46	通度寺 安養庵 北極殿 (朝·後)	C	1	四面同一 보아지	○	○
48	佛智寺 大雄殿 (朝·後)	C	2	四面同一 교두형 살미+소로	○	○

이상과 같이 내부의 공포 표현은 외부와 동일하게 「살미+소로」로 처리하는 수법과 그와는 상대적으로 외부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지니는 「보아지」를 사용한 경우가 확인됨으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수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C타입의 공포형식이 주심포의 주류가 되어감에 따라, 팔작지붕을 가지는 건물의 내부 공포 표현은 「보아지」로 통일되어져 간다.

(2) 구조적 변화와 공포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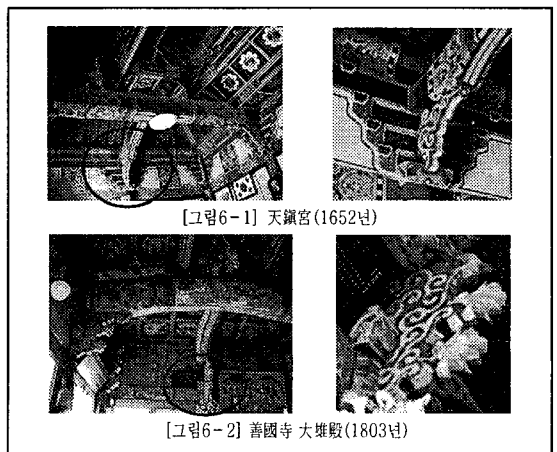
팔작지붕에서는 측면의 구조보강재로 층량이라는 부재를 사용한다. 이 층량부재는 구조재임과 동시에 내부의 공포 표현과도 관계되는 의장재이다. 따라서 팔작지붕의 구조에 관해 다소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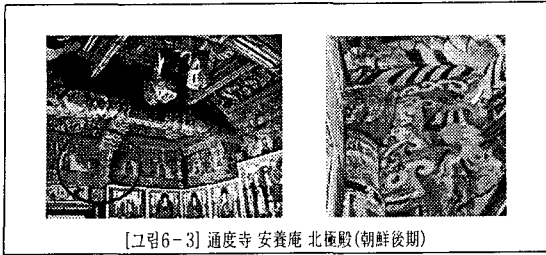
주심포의 팔작지붕을 갖는 건물은, 고려시대의 건물과 다포가 이입된 이후의 건물을 비교하여 보면,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보통, 주심포와 다포

를 구분하는 구조재로 평방과 층량을 들 수 있다. 이 두 부재는 다포의 영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주심포식의 팔작지붕 건물인 고려후기의 대표적인 유구, 부석사 무량수전에서는 이들 부재가 사용되지 않은 반면, 다포가 성행한 이후의 주심포식의 팔작지붕 건물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의장과 관련되는 층량은 건물내부 측면에서 대량과 직각방향으로 좌우로 대칭되게 걸리는 부재이다. 층량의 단부는 한쪽 편은 측면 기둥위에 놓이며 다른 한쪽 편은 대량 위에 놓인다. 이때, 층량은 대량전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대량 단면 폭에서부터 층량단부를 조금 내밀어 대량에 걸리게끔 처리한다. 이는 측면의 기둥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축부를 고정시키는 구조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측면 기둥 위로 짜이는 층량을 아래에서 지지하기 위해 공포가 사용되고, 이에 당연히 의장적 요소가 가미된다. 층량이 사용된 유구를 보면 高山寺大雄殿(朝鮮初期), 天鎮宮(1652년), 善國寺大雄殿(1803년), 通度寺安養庵北極殿(朝鮮後期), 佛智寺大雄殿(朝鮮後期)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공포 표현은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 고산사 대웅전에서는 「살미+소로」와 「보아지」를(그림5-2), 17세기 이후의 건물인 천진궁·선국사 대웅전(1803년)·통도사 안양암 북극전에서는 매우 장식성이 강한 「보아지」를(그림6), 그리고 다포의 영향이 강한 불지사 대웅전에서는 「교두형 살미+소로」를 사용한다(그림5-3).

한편, 대량위에 걸리는 층량 또한 내부의장으로 디자인 된다. 대부분의 경우, 단부에 용을 조각하는 수법을 사용하나, 간단히 처리할 경우에는 보 단면 부분에 문양을 그려 넣는다(그림6 참조).





[그림6-3] 通度寺 安養庵 北儀殿(朝鮮後期)

[그림 6] 총량이 사용된 건물의 내부표현

그림출처 : 저자 촬영(2003년 8월)

2.2.3 맞배지붕과 공포의 표현원리

맞배지붕은 팔작지붕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이 적어, 주심포는 물론이거니와 다포를 사용하는 건물에서도 격식이 높은 「殿」 건물에서부터 「門」·「樓」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된 지붕형태이다. 그리고 맞배지붕에 사용된 공포형식은, 팔작지붕에서는 볼 수 없었던 B타입 주심포식 공포를 비롯하여 A와 C타입 주심포식 공포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찰건물에 있어 맞배지붕은 사찰경내의 격식이 높은 건물에서부터 소규모 건물과 문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 범위가 넓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맞배지붕과 공포의 표현원리

맞배지붕에 사용되는 공포는 그 외부표현에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읽어 낼 수 있다(그림7).

- i. 정면과 후면 공포는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한다.
- ii. 격식이 높은 건물에 사용할 경우, 이출목이 상으로 한다.

우선 i의 '정면과 후면 공포는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한다.'는 원칙은 팔작지붕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후기에는 이미 정착되어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팔작지붕의 경우, 사면에 서까래를 놓아 지붕을 형성하므로 처마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포의 출목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맞배지붕의 경우 보 방향으로 서까래를 깔고 건물의 정면과 후면으로만 처마를 내기 때문에 측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정면과 측면의 처마 밑에만 공포의 출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i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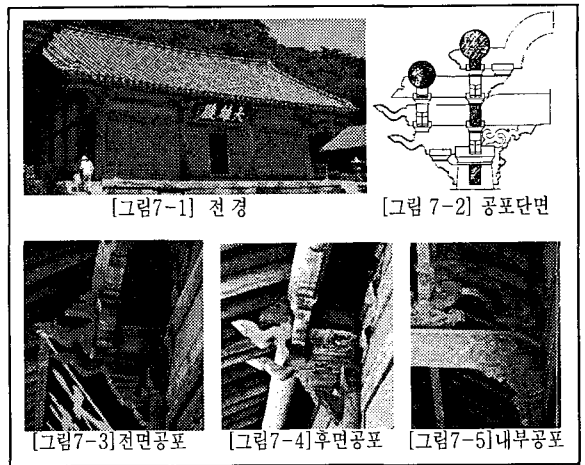
다음으로 ii의 법칙을 살펴보자.

맞배지붕에 사용되는 공포는 A와 B, 그리고 C타입 주심포가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A타입 주심포의 출목은 모두 이출목이다. 그리고 B와

C타입 주심포도 격식이 높은 건물이 되면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이출목을 형성한다.

한편, 내부의 공포 표현은, A·B·C타입이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C타입이 주류가 되기 전까지는 외부의 공포표현과 동일하게 「살미+소로」로 처리하는 수법과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의도로 「보아지」를 사용하는 수법이 보인다. 그 후 C타입이 주심포를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내부의 공포표현은 「보아지」로 통일된다.

단, 많지는 않지만 다포의 영향으로 「교두형 살미+소로」를 사용한 내부표현도 확인된다.



[그림7] 맞배지붕과 공포(修德寺大雄殿·1308년)

그림출처 : 『한국의 고건축4호』(문화재관리국, 1979년)
사진은 저자 촬영(2003년 8월)

(2) 맞배지붕과 측면의 공포표현

전술한 바와 같이, 맞배지붕의 경우 정면과 후면은 공포를 사용한다. 반면 측면의 처리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풍판이 있고 없기에 따라 결정적으로 의장표현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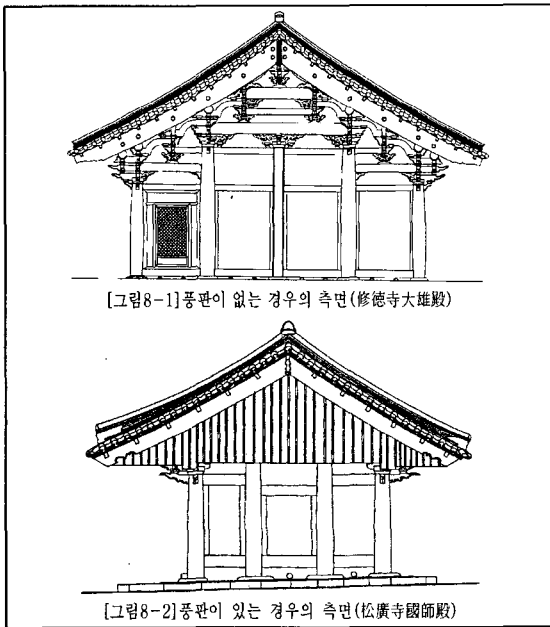
풍판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배지붕의 측면 박공 밑에 대는 판을 말한다. 이 풍판에 관한 문헌자료는 조선시대의 영건의례¹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기록으로 17세기 의례에 나타나며, 그 이후의 의례에서도 '風遮板'·'風穴板' 등의 용어가 확인됨으로¹⁵⁾, 적어도 17세기 이후의

14) 영건의례란 조선왕조가 행한 관영공사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종의 건축공사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기까지의 기록이 현재까지 전해온다.

15) 영건의례 사료중 가장 연대가 빠른 『昌慶宮修理所儀軌』(1647년)에는 '風遮板'·'風穴板'이라는 용어가,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1657년)에는 '風穴鉄'·'風破外金'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18세기의 기록인 『景慕宮改建廳儀

사찰건축에서는 사용되었으리라 본다¹⁶⁾. 맞배지붕의 유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풍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측면부분의 지붕이 조선 후기건물에 비해 기둥으로부터 많이 나와 있어 어느 정도 비바람을 차단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이에 반해 조선후기가 되면 목재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붕을 깊게 내지 못하게 되면서 건물의 측면 유지를 위해 풍판이 고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풍판은, 高柱의 柱頭부분이 완전히 가려지므로, 그 유무에 따라 측면의장이 크게 좌우된다. 풍판이 없는 경우에는, 출목은 없으나 정면과 후면 공포의 살미·첨차와 동일한 표현의 공포가 놓이며 측면 벽면도 디자인화 된다(그림8-1). 반면, 풍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적 부분이 생략되므로 매우 단순히 구조적 기능만 충족시키게끔 처리 된다 (그림8-2).



[그림8-1] 풍판이 없는 경우의 측면(修德寺大雄殿)

[그림8-2] 풍판이 있는 경우의 측면(松廣寺國師殿)

[그림8] 풍판의 유무와 측면의장

그림출처: 『한국의 고건축4호·2호』(문화재관리국, 1979년·1975년)

軌』(1776년)에서도 ‘風遮板’·‘風邊板’, 『文禮廟營建廳都監』(1789년)에서 ‘風遮板’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등, 풍판에 관련된 용어는 17세기에서 19세기의 의례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6) 현재 풍판이 달린 맞배지붕 건물인 경우, 창건당시에는 없었으나 후대에 붙여진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풍판이 언제 첨가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하게 단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목조건물 조영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선시대 후기에 널리 보급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풍판의 존재는 맞배지붕에 있어 중요시 되는 부분이 측면이 아닌 정면과 후면임을 말해준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모든 면을 동일하게 표현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면, 후면의 의장이 우선시되며, 측면의장은 그보다 격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측면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풍판으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식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표5] 맞배지붕과 공포형식

No	문화재명 (시대)	공포형식			天井 有無	風板 有無
		타입	출목수	외부공포 내부공포		
1	鳳停寺極樂殿 (12世紀)	A	2	正·後面同 살미+소로 (외부와 동일)	×	×
3	修德寺大雄殿 (1308년)	B	2	正·後面同 보아지	×	×
4	銀海寺居祖庵 靈山殿 (1375년)	B	1	正·後面同 보아지	×	×
5	淨石寺祖師堂 (1377년)	B	2	正·後面同 헛칠차+살미 +소로	×	×
6	江陵客舍門 (官我建築) (高麗末)	B	2	正·後面同 살미+소로	×	×
7	觀龍寺藥師殿 (朝·初)	B	1	正·後面同 살미+소로	×	×
8	松廣寺國師殿 (1420년前後)	B	1	正·後面同 보아지	×	○
9	淨水寺法堂 (正面: 1689 後面: 1423)	正面: C 後面: B	正面: 2 後面: 1	正面強調 보아지	○	○
10	無為寺極樂殿 (1430년)	A	2	正·後面同 보아지	뿔단위 그외 ○	×
12	道岬寺解脫門 (1473년)	B	2	正·後面同 보아지	×	○
13	環城寺尋劍堂 (朝·初)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14	莊陸寺大雄殿 (1592년以後)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15	松廣寺應眞堂 (1608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16	松廣寺下舍堂 (1622년)	B	1	正·後面同 보아지	○	○
17	華嚴寺冥府殿 (1630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18	開目寺圓通殿 (朝·中)	正面: 龕 後面: C	正面: 0 後面: 1	後面強調 보아지	×	○
19	鳳停寺華嚴講堂 (朝·中)	B	1	正·後面同 보아지	○	×
20	鳳停寺古今堂 (朝·中)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25	雙溪寺羅漢殿 (1641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26	雙溪寺金剛門 (1641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28	麻谷寺靈山殿 (1651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30	雙溪寺冥府殿 (1687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31	雙溪寺天王門 (1704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33	多率寺太陽樓 (1748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No	문화재명 (시대)	공포형식			天井 有無	風板 有無
		타입	출목수	외부공포		
37	仙岩寺八相殿 (1824년)	C	1	正面強調	보아지	○ ○
39	新光寺大雄殿 (1840년)	正面:A 後面:貫	正面:2 後面:0	正面強調	보아지	○ ○
40	大興寺大光明殿 (1841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41	松廣寺眞影堂 (1852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42	文殊寺文殊殿 (朝·後)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44	通度寺應眞殿 (朝·後)	A	2	正·後面同	교두형살미 +소로+보아지	○ ○
45	露田庵大雄殿 (朝·後)	C	1	正面強調	보아지	○ ×
47	通度寺天王門 (朝·後)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49	白羊寺四天王門 (1917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50	通度寺三聖閣 (1935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51	奉國寺大光明殿 (1958년)	C	1	正·後面同	보아지	○ ○

3. 결론

본 논문은 아직까지도 익공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강한 건물을 주심포라는 큰 틀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주심포의 맥락이 조선후기까지도 이어져 왔으며, 다포의 조영으로 인해 격식 높은 건물에 다포채택을 선호하는 한편으로, 규모가 작기는 하나 [殿] 건물에 팔작지붕과 C타입 주심포 공포를 사용하는 예에서 보듯이, 주심포가 다포에 결코 뒤지지 않은 고유한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심포 형식이 조선시대 이후, 부속된 건물이나 소규모 건축에 사용된 공포 형식이라는 기존평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주심포 공포는 건물에 있어 건물의 지붕 형태와 함께 건물의 격식을 나타내는, 시각적 효과가 충분한 의장 수법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 짓는 유효한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 즉 사찰 본당 내부의 부처의 세계와 외부세계를 확연하게 달리 표현하기 위한 수법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정한 표현 원리 안에서 공포 조성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건물 외부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 외부의 처마 밑, 즉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부분의 공포는 동일한 형태로 통일한다.
- ii . 가장 격식이 높은 건물에 사용하는 주심포식

공포는 이출목으로 한다.

i의 법칙에 따라, 모임과 팔작지붕의 경우 사면의 처마 밑이 모두 노출됨으로 '사면의 공포는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한다'는 원칙이, 맞배지붕의 경우 정면과 후면의 처마 밑이 노출됨으로 좌우측면과는 상관없이 '정면과 측면의 공포는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한다'는 원칙이 성립된다. 또한 주심포식 공포는 이출목이 가장 격식 높은 건물에 사용 된다¹⁷⁾.

위와 같은 주심포식 외부 표현원리를 건물의 격식과 조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팔작지붕+A타입 주심포식 공포+이출목」→ 「맞배지붕+A·B·C타입 주심포식 공포+이출목」→ 「맞배지붕+B·C타입 주심포식 공포 +이출목」

한편, 내부의 공포표현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초기에는 외부의 「살미+소로」로 표현한 것을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외부와는 달리 「보아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보인다. 즉, 외부의 공포표현과 내부의 공포표현을 동일하게 하는 수법과 전혀 다르게 나타내는 수법이 쓰였다. 그 후, 내부의 공포표현은 「보아지」 표현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이는 곧 건물을 조영하는 장인이,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확연하게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우리나라 목조 건물에서 공포는 의장재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구조재라는 점이다. 이는 일본목조건물의 공포가 구조와는 별개의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대조적이다. 즉 우리나라 목조건물에 사용된 공포는 구조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의 의장효과를 도출해 낼 것인가에 옛 장인들의 초점이 모여졌다 할 수 있다. 이는 주심포가 A형과 B형에서 B형으로, B형에서 C형으로 점차 의장성이 화려한 형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미의 형태나 보아지의 초각등의 디자인에 여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물론 장식화 현상은 공포 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다른 요소에서도 나타나지만, 17세기 이후 '건물 구조계의 장식화'라는 점에 입각해 볼 때, 공포가 가지는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 단, 法住寺圓通殿(1624년)의 경우 삼출목이다. 일반적으로 다포의 경우, 가장 격식 높은 건물에 삼출목이 사용된다. 法住寺圓通殿은 다포의 영향이 강한 건물이므로, 삼출목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포의 표현원리를 우리나라 목조건물의 주심포로 대상을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에, 아무래도 본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사찰경내의 타 건물과의 위계적 관계 속에서의 주심포 공포가 가지는 의미를 비롯하여,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목조건물 공포 표현원리의 특징을 명확히 추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 목조건물의 공포표현과의 비교·분석작업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과제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나가야 할 것이며, 많은 관련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미흡하나 본 논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1. 임천 『미술고고학용어집 : 건축편』 중앙박물관, 1965
2. 장기인 『한국건축용어집 제1-4권』 한국건축가협회, 1966-1969
3. 리여성 『조선건축 미술의 연구』 국립출판사, 1956
4.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75
5. 中西章 『朝鮮半島の建築』理工学社, 1989
6. 藤井恵介 『日本建築のレトリック-組物を見る-』INAX, 1994
7.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8.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9. 김왕직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발언, 2000

□ 학위논문·학회논문

1. 양윤식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의장」 서울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2. 김도경 「한국건축 공포연구의 문제점과 몇 가지 제안」 건축역사연구 제 11권 4호, 통권 32호, 2002년 12월
3. 최고은 「韓國·中國·日本の挿肘木に関する研究(その1)-挿肘木の形態について-」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No.556, 2002년6월

최고은 「韓國·中國·日本の挿肘木に関する研究(その2)-挿肘木の機能について-」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No.565, 2003년3월

□ 보고서

1.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고건축』 시리즈
2. 문화재관리국 『마곡사 실측조사보고서』 1989
3. 문화재관리국 『봉정사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1992
4. 문화재관리국 『법주사팔상전수리공사보고서』 1998

□ 고서

1. 『昌慶宮修理所儀軌』 1647
2.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1657
3. 『景慕宮改建廳儀軌』 1776
4. 『文禮廟宮建廳都監』 1789

[표1]연구대상의 사찰건축

No	문화재명	건립연대	규모(간) (정면×측면)	지붕형태	위치	문화재지정(지정연월일)
1	鳳停寺極樂殿	12世紀	3×4	맞배지붕	慶尙北道 安東市 西後面 台庄里	国宝0015号(1962.12.20)
2	浮石寺無量壽殿	1270년	5×3	팔작지붕	慶尙北道 榮州市 浮石面 北枝里	国宝0018号(1962.12.20)
3	修德寺大雄殿	1308년	3×4	맞배지붕	忠淸南道 禮山郡 德山面 斜川里	国宝0049号(1962.12.20)
4	銀海寺居祖庵 靈山殿	1375년	7×4	맞배지붕	慶尙北道 永川市 淸通面 新源里	国宝0014号(1962.12.20)
5	浮石寺祖師堂	1377년	3×1	맞배지붕	慶尙北道 榮州市 浮石面 北枝里	国宝0019号(1962.12.20)
6	江陵客舍門(官我建築)	高麗末	3×2	맞배지붕	江原道 龍岡洞58-1	国宝0051号(1962.12.20)
7	觀龍寺藥師殿	朝·初	1×1	맞배지붕	慶尙南道 昌寧郡 昌寧邑	宝物0146号(1963.01.21)
8	松廣寺國師殿	1420년前後	4×3	맞배지붕	全羅南道 順天市 松光面 新坪里	国宝0056号(1962.12.20)
9	淨水寺法堂	正面:1689년 後面:1423년	3×4	맞배지붕	仁川市 江華郡 華道面	宝物0161号(1963.01.21)
10	無為寺極樂殿	1430년	3×3	맞배지붕	全羅南道 康津郡 城田面 月下里	国宝0013号(1962.12.20)
11	高山寺大雄殿	朝·初	3×3	팔작지붕	忠淸南道 洪城郡 結城面 無量里	宝物0399号(1963.09.02)
12	道岬寺解脱門	1473년	3×2	맞배지붕	全羅南道 靈巖郡 郡西面 道岬里	国宝0050号(1962.12.20)
13	環城寺尋劍堂	朝·初	3×3	맞배지붕	慶尙北道 慶山市 河陽邑 沙器洞	市都有形文化財084号 (1975.12.30)
14	莊陸寺大雄殿	1592년以後	3×3	맞배지붕	慶尙北道 盈德郡 蒼水面 葛川里	市都有形文化財138号 (1979.12.18)
15	松廣寺應眞堂	1608년	3×3	맞배지붕	全羅南道 順天市 松光面 新坪里	市都有形文化財254号 (2001.06.05)
16	松廣寺下舍堂	1622년	3×2	맞배지붕	全羅南道 順天市 松光面 新坪里	宝物0263号(1963.01.21)
17	華嚴寺冥府殿	1630년	4×3	맞배지붕	全羅南道 求禮郡 馬山面 黃田里	未指定
18	開目寺圓通殿	朝·中	3×3	맞배지붕	慶尙北道 安東市 西後面 天燈山	宝物0242号(1963.01.21)
19	鳳停寺華嚴講堂	朝·中	3×2	맞배지붕	慶尙北道 安東市 西後面 台庄里	宝物0448号(1967.06.23)
20	鳳停寺古今堂	朝·中	3×2	맞배지붕	慶尙北道 安東市 西後面 台庄里	宝物0449号(1967.06.23)
21	法住寺圓通寶殿	1624년	3×3	모입지붕	忠淸北道 報恩郡 內俗離面	宝物0916号(1987.03.09)
22	華嚴寺圓通殿	未詳	3×3	팔작지붕	全羅南道 求禮郡 馬山面 黃田里	未指定
23	興國寺圓通殿	1624년	5×3	팔작지붕	全羅南道 麗水市 中興洞	市都有形文化財028号 (1974.09.24)
24	法住寺捌相殿	1626년	1-2층5×5 3-4층3×3 5층2×2	모입지붕	忠淸北道 報恩郡 內俗離面	国宝0055号(1962.12.20)
25	雙溪寺羅漢殿	1641년	3×2	맞배지붕	慶尙南道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	市都有形文化財124号 (1974.12.28)
26	雙溪寺金剛門	1641년	3×2	맞배지붕	慶尙南道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	市都有形文化財127号 (1974.12.28)
27	通度寺萬歲樓	1644년	5×3	팔작지붕	慶尙南道 梁山市 下北面 芝山里	市都有形文化財193号 (1981.12.21)
28	麻谷寺靈山殿	1651년	5×3	맞배지붕	忠淸南道 公州市 寺谷面 靈巖里	宝物0800号(1984.11.30)
29	天鎮宮	1652년	3×2	팔작지붕	慶尙南道 密陽市 內一洞	市都有形文化財117号 (1974.12.28)
30	雙溪寺冥府殿	1687년	5×2	맞배지붕	慶尙南道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	市都有形文化財123号 (1974.12.28)
31	雙溪寺天王門	1704년	3×2	맞배지붕	慶尙南道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	市都有形文化財126号 (1974.12.28)
32	松廣寺羽化閣	18世紀初	4×1	(입구) 팔작지붕 (출구) 맞배지붕	全羅南道 順天市 松光面 新坪里	市都有形文化財059号 (1976.09.30)
33	多率寺太陽樓	1748년	5×3	맞배지붕	慶尙南道 泗川市 昆明面 龍山里	市都有形文化財83号 (1974.02.16)
34	通度寺觀音殿	1749년	3×3	팔작지붕	慶尙南道 梁山市 下北面 芝山里	市都有形文化財251号 (1985.11.14)
35	善國寺大雄殿	1803년	3×2	팔작지붕	全羅北道 南原市 산곡洞419	市都有形文化財114号 (1985.08.16)
36	大興寺龍華堂	1813년	8×3	(右) 맞배지붕 (左) 팔작지붕	全羅南道 海南郡 三山面	市都有形文化財093号 (1982.10.15)
37	仙岩寺八相殿	1824년	5×3	맞배지붕	全羅南道 順天市 昇州邑 竹鶴里	市都有形文化財060号 (1976.09.30)
38	仙岩寺圓通殿	1824년	3×3	팔작지붕	全羅南道 順天市 昇州邑 竹鶴里	市都有形文化財169号 (1990.02.24)

No	문화재명	건립연대	규모(간) (정면×측면)	지붕형태	위 치	문화재지정(지정연월일)
39	新光寺大雄殿	1840년	3×3	맞배지붕	全羅北道 長水郡 천천面 와룡里	市都有形文化財113号 (1985.08.16)
40	大興寺大光明殿	1841년	3×3	맞배지붕	全羅南道 海南郡 三山面	市都有形文化財094号 (1982.10.15)
41	松廣寺眞影堂	1852년	(右)3×2 (左)3×1	맞배지붕	全羅南道 順天市 松光面 新坪里	市都有形文化財097号 (1982.10.15)
42	文殊寺文殊殿	朝·後	3×1	맞배지붕	全羅北道 高敞郡 古水面 은사리	市都有形文化財052号 (1974.09.27)
43	松廣寺羅漢殿	朝·後	3×3	팔작지붕	全羅北道 完州郡 所陽面 大興里	市都有形文化財172号 (1999.07.09)
44	通度寺應眞殿	朝·後	3×3	맞배지붕	慶尚南道 梁山市 下北面 芝山里	市都有形文化財196号 (1981.12.21)
45	露田庵大雄殿	朝·後	3×2	맞배지붕	慶尚南道 梁山市 下北面 용연리	市都有形文化財202号 (1982.08.02)
46	通度寺 安養庵北極殿	朝·後	3×2	팔작지붕	慶尚南道 梁山市 下北面 芝山里	市都有形文化財247号 (1985.11.14)
47	通度寺天王門	朝·後	3×2	맞배지붕	慶尚南道 梁山市 下北面 芝山里	市都有形文化財250号 (1985.11.14)
48	佛智寺大雄殿	朝·後	3×2	팔작지붕	全羅北道 群山市 羅浦面 장상리	市都有形文化財117号 (1985.08.16)
49	白羊寺四天王門	1917년	5×2	맞배지붕	全羅南道 長城郡 北下面 藥水里	市都有形文化財026号 (1974.09.24)
50	通度寺三聖閣	1935년	3×1	맞배지붕	慶尚南道 梁山市 下北面 芝山里	未指定
51	奉國寺大光明殿	1958년	3×3	맞배지붕	慶畿道 城南市 壽井區 太平洞	市都有形文化財101号 (1980.06.02)

朝·初：朝鮮時代의 初期(1392년-1600년)
 朝·中：朝鮮時代의 中期(1600년-1670년)
 朝·後：朝鮮時代의 後期(1670년-1910년)

The Expressional Principles of Wooden Brackets in *Jusimpo* Style

- Focusing on Temple building -

Choi, Go-Eun

(Foreign Research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Nara)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meaning of wooden brackets that are distinctive elements of wooden architecture in Korea, Japan, and China. Existing studies about wooden brackets have been limited to the boundary of formalism, so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make a breakthrough in the field of those studies. The Wooden brackets in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decorative elements, and the principles of their design are examined. The specific subject of the study is wooden architecture with *Jusimpo*-styled brackets that have brackets only on pillars. The definition of *Jusimpo* is reexamined first, and *ChulMok-Ikkong* which has not been regarded as a *Jusimpo*-styled wooden bracket is interpreted as *Jusimpo*-styled one in this study.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Jusimpo* is examined how it is expressed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roof in a building.

In view of the results, the wooden bracket system is an effective technique to express the formality, and two designing principles can be seen in *Jusimpo*; one that wooden brackets observed externally are standardized and regarded as the same ones, and the other that the style of wooden brackets used in the most formal building is *Yi-ChulMok*.

These designing principles mean that the carpenter who was in charge of building the architecture had certain principles when expressing wooden brackets as well as the roofs according to the class of the architecture. In addition, although the styles of wooden brackets that were used in the most formal architecture during the *Chosun* period were mostly *Dapo*, *Jusimpo* in the form of *Yi-ChulMok* was also adopted in some temples depending on their scale, and that means *Jusimpo*-styled wooden brackets were never considered to be inferior to *Dapo*-styled ones. And this point leaves the argument that the reexamination of *Jusimpo*-styled wooden brackets which have been regarded as the style used in the attached building or small structures since the *Chosun* dynasty should be conducted.

Keywords : *Jusimpo*, Wooden bracket, Expressional Principles, Temple building, Ancient Architecture
